◈ 서울특별시조례 제7299호

서울특별시 출자 ·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19년 9월 26일

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

제22조의2 제목 중 “예산 및 결산의 제출”을 “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”으로 한다.

제2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출자·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   출자·출연기관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시의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출자·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   출자·출연기관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시의회에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.(제22조의2제3항)